

1. 개정 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 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의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장비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세분화(안 제10조의2)

실제 항공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맞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를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 기본비행훈련장치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정함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절차 등 지정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91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 신청에서부터 지정서 발급까지의 지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91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행정처분 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함

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안전관련 교신내용 복창 의무화(안 제248조)

최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이 기동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이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내용이 안전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복창하고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20.11)됨에 따라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자 함

마. 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시 제작번호 사진 제출(안 제301조)

기체와 소유자 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체신고 시 기체 제작번호 촬영사진을 제출토록 보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고자 함

바.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보완 및 출결관리 근거 마련(안 제307조)

법 제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행경력 기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단말기 설치 및 출결관리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사.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보완(안 별표 4)

그간 불명확했던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중 “착륙경험”을 “완전 착륙한 경험”으로 보완하며, 항공기 장비 발달 등으로 현재 항공기 운

항공환경 상 현실성이 없는 공중항법과 무선설비 조작 경험을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요건에서 제외하고자 함

아. 법에서 위임한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안 별표 10, 별표 39, 별표 42, 별표 44의2)

항공종사자 자격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외국인 조종사 음주 단속 근거 등이 항공안전법에 마련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한 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별표 14, 별표 42)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21.2)에 따라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함

차. 운항관리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안 별표 12)

부령에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에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 없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운항관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카.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 최신화(안 별표 13)

의학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실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 중 출자, 타진기 등 과거의 검사 의료장비를 삭제하고, 신체검사 시 실제 기준량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 특정 형식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특정 등급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간단한 조작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다.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 장치로 조종사를 훈련하는 실제의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제82조제2항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을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탑승경력 인정)”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전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 운용장비 목록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8.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의 내용(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와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⑥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지정 당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검사 등이 이루어지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말한다.
- ⑧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1조의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 제121조제3항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4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 제122조제2항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4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 제123조제2항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4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4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141조제3항 단서 중 “지방항공청장”을 “제9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을 “별지 제74호의2서식의”로, “운항 예정일 25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15일”로 한다.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 다음”으로,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을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15일 전까지”로 한다.

제2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 다음”으로,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을 “서류를 첨부하여”로, “25일”을 “15일”로 한다.

제218조제4항제1호 단서 중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을 “제9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적요소(Human Factor)”를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ce)”로 한다.

제24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탑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을 이

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관제사는 제5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이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로 15센티미터, 세로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제3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을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라. 전자출결을 위한 단말기 1대 이상(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제30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와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교육생 및 교관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운송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1)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100시간”을 “최대 100시간”으로, “인정하고,”를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다만, 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란 2)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100시간”을 “최대 100시간”으로, “인정하고,”를 “모의비행장치는 100시간, 비행훈련장치는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다만, 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산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목 사업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1)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10시간”을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으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란 2)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사업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2) 후단 중 “10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1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으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목 자가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1)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5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하고, 같은 목 부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나) 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목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자가용 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1)가) 중 “착륙”을 “완전착륙”으로 하고, 같은 란 1)가) 및 나) 외의 부분 후단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5시간”을 “최대 5시간”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가) (2)를 다음과 같이하고 가) (4)와 나)를 삭제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후 관제실무경력(이 경우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주업무로 하는 관제기관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계기 비행 증명의 응시경력란 (2)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

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의비행장치 시간만 포함 할 수 있다.

별표 4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4항”으로, “제3종으로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별표 7의2부터 별표 7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5) 전단 중 “2”를 “5”로 하고, 같은 5) 후단 중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을 “기간의 계산은”으로,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를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로, “다시 위반한”을 “하여 적발된”으로 하며, 같은 목 나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8)을 10)으로 하고, 같은 목 9)를 11)로 하며, 같은 목 10)부터 33)까지를 각각 12)부터 3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 수행하게 하거나 항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2	자격증명 취소
---	-----------------	---------

공중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9)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3	자격증명 취소

별표 12 제1호가목2) 중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를 “비행훈련시간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목 4)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모의비행장치”를 각각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표 같은 표 제2호가목2) 중 “비행훈련시간은 10시간 이내에서 인정한다”를 “비행훈련시간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모의비행장치”를 각각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2)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2) 나)(2) 중 “한 명”을 “한명”으로 하며, 같은 목 4)가)(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실기교육: 과목별 배분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 비행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과목	동승 비행시간
1. 기본계기비행(정상, 비정상 및 비상상태 회복절차 등 포함)	10
2. 계기비행(계기이륙, 표준계기 출발 및 도착, 항공로 비행, 체공, 접근 및 착륙 등 포함)	18
3. 야외 계기비행	10
4.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계	40

단,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12. 운항관리사과정 지정기준

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1) 학과교육: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총교육시간은 4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교육내용별 교육시간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목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항공법규	항공안전법	45	45
항공기개론	항공기 작동의 원리(엔진, 계기장치 등)	15	45
	항공기 운영 제약사항	15	
	최소 장비 목록	15	
항공기 성능계산 및 비행계획	항공기 성능 및 비행 특성	15	45
	성능계산, 연료소모량 계산	15	
	비행계획 작성 및 준비	15	
인적성능	인적성능	45	45
항공기상	기상일반	15	45
	항공기상	15	
	항공기상분석 및 실무	15	
공중항법 및	항행안전시설	15	45

항행안전시설	항공지도	15	
	공중항법	15	
운항절차	운항절차	45	45
비행원리	비행원리	45	4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항공교통	15	45
	항공통신	15	
	항공정보	15	
시험(중간시험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5	5
계			410

- 2) 실기교육: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과목	교육시간
1. 운항관리 실습교육	39
2. 시험(중간시험은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계	45

나. 교관 확보기준

1) 학과교관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경력이 있을 것
- (4) 해당 과정에 맞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항공법규, 항공기개론, 인적성능, 항공기상, 비행원리,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과목의 학과교관은 제외한다)을 가질 것
- (5) 다음 표에 해당하는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항공법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항공기개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항공기 성능계산 및 비행계획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적성능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하고 인적성능 과정을 이수한 사람
5. 항공기상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6. 공중항법 및 항행안전시설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7. 운항절차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8. 비행원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9.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의 항공교통관제 교관자격,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나) 운영기준

- (1)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운항관리 실습교관으

- 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 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
- (2) 학과교관의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 1시간당 1시간 이상 주어질 것
- 2) 운항관리 실습교관
- 가) 자격요건
- (1) 21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에 맞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보유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 나) 운영기준
- (1) 운항관리 실습교관의 교육시간은 1주당 20시간(학과교관으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며, 학과시험감독으로 근무한 시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운항관리 실습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20명 이하로 할 것
- 3) 주임교관
- 가) 24세 이상일 것
- 나)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경력, 능력 및 지휘통솔력을 갖춘 학과 및 운항관리 실습교관 중 각각 1명을 학과주임교관 및 실습주임교관으로 임명할 것
- 4) 실습시험관
- 가) 자격요건
- (1) 23세 이상일 것
- (2) 해당 과정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항관리 실습교육 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운항관리사로서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
- (3) 최근 2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또는 「공항시설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운영기준
- (1) 필요 시 실습시험관을 학과교관 및 운항관리 실습교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및 관리자는 실습시험관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 (3) 실습시험관은 자신이 운항관리 실습 과목을 교육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 1) 강의실, 자료열람실, 교관실 및 행정사무실 등 학과교육 및 운항관리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은 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건축관계 법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교육평가방법

- 1) 학과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습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3) 교육생은 총학과교육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4) 학과시험 범위는 제 12 호 가목 1) 학과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5) 실기시험 범위는 제 12 호 가목 2) 실습시험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6)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7) 과목별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바.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교육기관의 명칭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3)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4) 교육목표 및 목적
- 5)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6) 교육생 응시기준 및 선발방법 등
- 7)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8) 편입기준
- 9) 결석자에 대한 보충교육 방법
- 10)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11) 학사운영(입학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2)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13)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사. 역량기반의 교육 및 평가(CBTA: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를 할 것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진료실	임상병리실 (혈액검사/소변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신체검사실	방사선실
청력검사실	대기실

2. 의료장비기준

장비의 종류	
신장계	심전도기
체중계	※ 운동부하심전도기
청진기	시력표/시력검사기
혈압계	시야검사기
이비경	사위검사기
검안경	안압측정기
흉부X선검사기	색각검사기
소변검사스틱	※ 입체시측정기
혈액검사기	※ 안저검사기
※ 폐기능검사기	청력검사기
※ 뇌파검사기	※ 청력검사부스

비고

1. 시설 및 장비의 기준량은 1이다.
2. ※는 권고 장비이다.

별표 14 비고 제1호 전단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을 “기간의 계산은”으로, “최초로 행

정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며, 같은 비고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정도 및 횟수”를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0의2 제2호 가목 중 “착륙을 한 경우”를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을 “항공기가 주기(駐機) 또는 가목의 지상운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중”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를 “항공등화시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항시설법」 제4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중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에 미달한 경우
- 2)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별표 35 제2호가목12) 중 “모의비행장치를 훈련 및 심사에 사용하거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훈련, 심사 또는”으로, “모의비행장치를 훈련 및 심사에 사용한”을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훈련 또는 심사에 사용한”으

로 한다.

별표 39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근거 법 조문란 “법 제105조제1항제5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05조제1항제5호	항공기운항정지(20일)
---	---------------	--------------

별표 39 제6호의 근거 법 조문란 “법 제105조제1항제6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4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별표 42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종전의 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구분

- 1) 자격증명등의 취소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 2) 효력의 정지란, 일정기간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및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

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위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위 5)에 따른 기간내에 행

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6) 위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를 한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장애,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착륙장 시설의 미비·장애, 경량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경량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
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
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2 제2호(중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42 비고를 삭제
한다.

2. 개별 기준

가. 자격증명등

위반행위 또는 사유	근거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1호	자격증명 취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2호	
가) 벌금 200만원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효력정지 50일
다) 벌금 100만원 미만		효력정지 30일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 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3호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 우		
4)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 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3호	자격증명 취소
가)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효력 정지 90일 이상
나)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인 경우		효력 정지 30일 이상
다) 경량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5) 법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 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6) 법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 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 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 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 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7) 법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14조제1항 제5호의2	자격증명 취소

8) 법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법 제114조제1항제5호의3	자격증명 취소
9) 법 제113조(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0) 법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7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1)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8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2)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장소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9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13)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	법 제114조제1항제10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14)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1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소
15)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2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16) 법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3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7) 법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구역 또는 주의 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4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8) 법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5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19) 법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6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20) 자격증명등의 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114조제1항제17호	자격증명 취소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114조제2항제1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2)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4조제2항제2호	효력정지 30일 이상
3)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14조제2항제3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4)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법 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법 제114조제2항제3호	가. 주류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지 60일 -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5) 법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4조제2항제3호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

별표 44의2 제1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의 처분내용란 중 “조종증명”을 “조종자 증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법 조문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법 조문란 중 “법 제125조제2항제3호”를 각각 “법 제125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표 7호(중전의 제5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

2항제4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중전의 제6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5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중전의 제7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6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중전의 제8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7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중전의 제9호)의 해당 법 조문란 “법 제125조제2항제8호”를 “법 제125조제5항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2	조종자 증명 취소
6.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	법 제125조제5항제3호의3	조종자 증명 취소

별표 44의2 비고 제3호 전단 중 “최근 1년간”을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을 “기간의 계산”으로,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을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같은 위반행위를”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로, “다시 위반한”을 “하여 적발된”으로 한다.

별표 47 제17호 중 “법 제39조제3항”을 “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모의 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운종용조종사”를 “운송용조종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6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3호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187호 <2021.5.18.>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의2]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건(제91조제3항 관련)

1.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정책, 과정 및 절차를 규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의 책무 및 권한을 명시한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 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모든 사안이 완전히 충족되도록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인증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나.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책, 실행, 또는 절차 및 필요시 개조 이행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해당 품질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보장
 - 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 프로그램 및 해당 품질관리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정기보고
 - 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인증에 관하여 운영자와 지방항공청장간의 모든 사안을 다룰 주요 접촉자로서 역할
 - 마. 운영자의 각 지역의 개별 인력에게 책임관리 직무대리 지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가 프로그램 변경 제안 및 이행절차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과정 및 절차
4.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검사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정기검사(특별검사 포함)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5. 항공기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유효한 데이터패키지(Validation Data Package)의 획득 및 유지보수 방법을 기술한 절차
6. 지방항공청장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7.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를 신청하는 절차
8. 검사 시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비행단계별 점검(Subjective Test) 및 세부항목별 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 점검(Objective Test)을 수행하는 절차
9. 검사 결과 점검 불일치 사항 등을 수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절차
10.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른 마스터 검사교범의 제공에 관한 절차
11. 매 분기별 검사교범의 검사에 관한 절차와 매 24시간 마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비행 전 기능점검(Preflight Check)에 관한 절차

12. 지방항공청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기검사 일정을 협의하는 절차
13. 모의비행훈련장치 결함관리대장에 결함사항을 기록하고 결함사항의 수정 등의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의 관리 절차
14. 교관, 위촉심사관 또는 정부심사관 등이 비행 전 기능점검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심사 등을 수행하는 동안 발견된 장비 및 구성품의 누락, 오작동, 부작동 등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기록하는 절차
15. 운영자가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내용이 변경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절차
16.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 및 사용 개시에 관한 절차
17.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특별검사 후 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 (예 : 마스터 검사교범 자료의 최신화 등)
18. 구성품의 누락, 오작동 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동안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방안을 기술한 다음 각목의 절차
 -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내 또는 인근에 누락, 오작동 또는 작동되지 않는 구성품을 게시하는 방안
 - 나. 30일 이내에 수리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19. 모의비행훈련장치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20. 다음 각목에 대한 운영자의 기록유지 절차
 - 가. 마스터 검사교범 및 각 개정항목
 -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발급 이후 수행된 개조, 변경작업 내용
 - 다. 최근 2년 동안의 검사교범 점검 결과와 정기검사 결과
 - 라. 최근 2년 동안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함관리 대장
 - 1) 누락, 오작동 또는 부작동하는 구성품이나 장비 목록
 - 2) 결함 사항의 수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
 - 3) 결함 사항의 수정 조치가 이행된 날짜
 - 4) 결함 사항의 수정 조치를 완료한 사람의 성명

[별표 7의3] <신 설>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및 운용범위(제91조제4항 관련)

1. 비행기

종류	등급	운용범위
모의비행장치	D등급	(1) 모의비행장치 C등급의 범위 (2) 실제 비행기로 심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과목(비행기 외부 및 내부 육안검사) 이외의 모든 심사 및 시험
	C등급	(1) 모의비행장치 B등급의 범위 (2) 기량심사(단, 가장 노선심사는 제외) (3) 항공종사자 형식한정 비행훈련 및 시험
	B등급	(1) 모의비행장치 A등급의 범위 (2) 이착륙 경험(야간 이착륙 포함)
	A등급	(1) 비행훈련장치의 범위 (2) 비행훈련(초기, 전환, 승급 포함) (3) 기량심사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
비행훈련장치	7등급	(1) 비행훈련장치 6등급의 범위 (2) 계기접근훈련
	6등급	(1) 비행훈련장치 5등급의 범위 (2) 비행교육(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자격회복훈련(야간투시경)
	5등급	(1) 비행훈련장치 4등급의 범위 (2) 비행교육(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계기비행 경험 유지 (4) 자격회복훈련(계기비행)
	4등급	(1) 기본비행훈련장치의 범위 (2) 비행교육(다발엔진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비행훈련(비상절차 포함) (4) 이착륙 경험(야간 이착륙 제외) (5) 계기접근훈련(선회접근 제외) (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에 한한다, 단 허가를 받은 경우)
기본비행훈련장치	-	(1) 비행 전·후 조종실 계기 및 장비점검 (2) 비행교육(단발엔진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계기비행 경험

2. 헬리콥터

종류	등급	운용범위
모의비행장치	D등급	(1) 모의비행장치 C등급의 범위 (2) 실제 헬리콥터로 심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과목(헬리콥터

		외부 및 내부 육안검사) 이외의 모든 심사 및 시험
	C등급	(1) 모의비행장치 B등급의 범위 (2) 기량심사 (3) 항공종사자 형식한정 비행훈련 및 시험
	B등급	(1) 비행훈련장치의 범위 (2) 비행훈련(초기, 전환, 승급 포함) (3) 기량심사 (4) 이착륙 경험(야간 이착륙 포함)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
비행훈련장치	7등급	(1) 비행훈련장치 6등급의 범위 (2) 계기접근훈련
	6등급	(1) 비행훈련장치 5등급의 범위 (2) 비행교육(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자격회복훈련(야간투시경)
	5등급	(1) 비행훈련장치 4등급의 범위 (2) 비행교육(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계기비행 경험 유지 (4) 자격회복훈련(계기비행)
	4등급	(1) 기본비행훈련장치의 범위 (2) 비행교육(다발엔진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비행훈련(비상절차 포함) (4) 비정상적인 비행자세(Unusual Attitudes)에서의 회복 훈련 (5) 이착륙 경험(야간 이착륙 제외) (6) 계기접근훈련(선회접근 제외) (7)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에 한한다, 단 허가를 받은 경우)
기본비행훈련장치	-	(1) 비행 전·후 조종실 계기 및 장비점검 (2) 비행교육(단발엔진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범위) (3) 계기비행 경험

비고

- 등급별 운용범위 세부사항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다.
- 항공기를 대신하여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국지비행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한정자격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한정자격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의 군용항공기의 기장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 총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한정자격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같은 등급의 항공기 조종사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형식의 한정자격이 요구되는 2개 기종 이상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별표 7의4]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9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의한 성능 및 점검요령을 위반한 경우 3) 보고없이 최초 설치장소에서 이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	효력정지 60일 효력정지 60일 효력정지

동되어 다른 곳에 설치된 경우	30일
4) 중요한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 발생 후 특별검사 없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운용한 경우	효력정지 30일
5)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의한 훈련계획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30일

비고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나목에 따른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운영규정 위반, 성능 및 점검요령 위반, 설치장소 변경, 특별검사 미수행, 훈련계획 위반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효력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			
모의 비행 훈련 장치	종류/등급/형식(모델)		
	제조사명		
	소유자		
	제조일		
	제조번호		
설치장소			

검사 희망 일시 및 장소				
검사구분	지정	정기	특별	기타
제조 후 총 사용시간				
전회검사 후 총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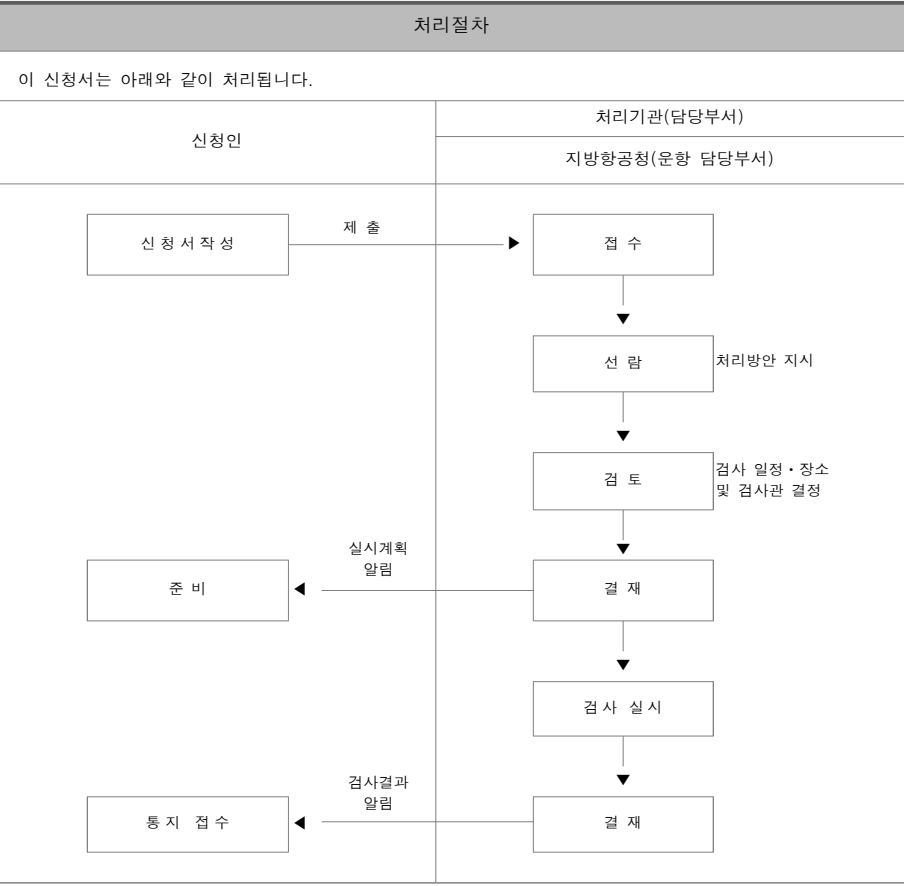
「항공안전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지정검사에 한한다)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규정(지정검사에 한한다)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운용장비목록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8.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의 내용(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4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앞 쪽)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Qualification Certificate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		지정서 번호(Certificate No.)
1. 운영자 (Name of Operator)		
2. 소재지 (Location)		
3.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모델) (Category, Class, Type (Model) of Aircraft)		
4. 종류 및 일련번호 (Category of Qualification and S/N)		
5.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Qualification)		
6. 제조사 (Manufacturer)		
7.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위 장치를 「항공안전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4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지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39bis-3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91ter-2·3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Date of issue 지방항공청장 직인 Administrator of ○○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뒤 쪽)

모의비행훈련장치 명세서 FSTD SPECIFICATION					
가.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모델) (Category, Class, Type (Model) of aircraft)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Qualification)					
다. 시각시스템 (Visual system)					
라. 운동시스템 (Motion system)					
마. 엔진 구성 (Engine fit)					
바. 계기 구성 (Instrument fit)					
사. 공중충돌경고장치 구성 (ACAS fit)					
아. 돌풍 (Windshear)					
자. 부가성능 (Additional Capabilities)					
차. 제한사항 (Restrictions or Limitations)					
가. 훈련, 시험 및 심사를 위한 정보 (Guidance information for training, testing and checking considerations)					비고 (yes or n/a)
CAT I	RVR	m	DH	ft	
CAT II	RVR	m	DH	ft	
CAT III(lowest minimum)	RVR	m	DH	ft	
LVTO	RVR	m			
IFR-training / check					
Type rating					
Proficiency checks					
Autocoupled approach					
ACAS I/II					
Windshear warning system / predictive windshear					
WX-radar					
HUD / HUGS					
FANS					
GPWS / EGPWS					
GPS					
EDTO capability					
Others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서식]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휴대폰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투하 또는 살포물건의 종류		
	투하 또는 살포 물건의 크기		
	투하 또는 살포의 방법		
	투하 또는 살포의 장소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낙하산 강하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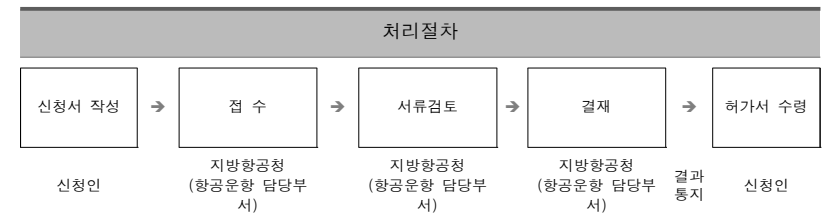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비행경로도 첨부) 3. 조종자증명
------	--

(뒤 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휴대폰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강하	낙하산 강하일시	낙하산형식, 기타 필요사항	
	낙하산강하장소(주소, 좌표, 반경)		
	낙하산 강하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종류	낙하산 크기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낙하산 강하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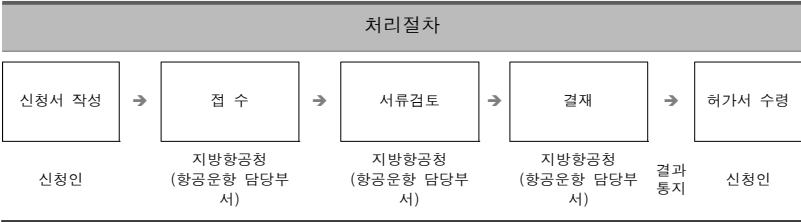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행계획서(비행경로 등) 및 임시공역(비행제한)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인증서(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5. 보험가입증명서(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

(뒤 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곡예비행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	팩스	휴대폰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
	비행고도		
	비행경로		
곡예비행	곡예비행내용		비행일시
	곡예비행장소(주소, 좌표, 반경)		
조종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 에 따라 낙하산 강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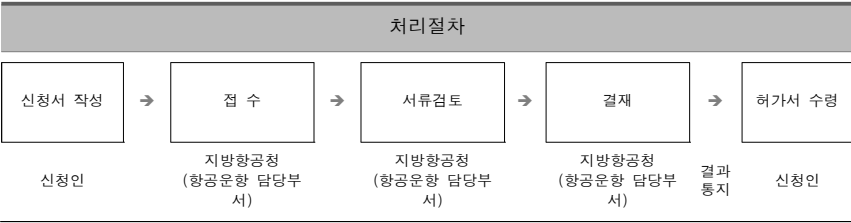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비행경로도 첨부) 3. 조종자증명
------	--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뒤 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 특정 형식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특정 등급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에 대한 간단한 조작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다.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생략)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모의비행훈련장치-----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모의비행장치 교관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	3. 모의비행훈련장치 -----

한다)의 면제 4. (생략) ②·③ (생략) 제91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항공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탑승경력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삭 제> <삭 제>	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 운용장비 목록을 운용
--	---	---	--

	<u>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u> 8.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의 내용(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u> 9. 그 밖에 <u>참고사항을 적은 서류</u>			1.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u> 2.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규정</u> 3. <u>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 기록 비교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u>
<u><신 설></u>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u>		<u><신 설></u>	⑥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u>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지정 당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검사 등이 이루어지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말한다.</u>
<u><신 설></u>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u>모의비행훈련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와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③ <u>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u>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u><신 설></u>	⑦ <u>모의비행훈련장치</u> -----. ⑧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u>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다만, 제139조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 심사는 <u>지방항공청장이</u>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u>모의비행장치</u> 로 심사할 수 있다.	----- ----- ----- ---- 제9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모의비행훈련장치-----.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를 운항 예정일 2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 ----- ----- ----- ----- 별지 제74호의2 서식의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 ----- ----- ----- --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 다음 -- --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 비행 예정일 2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 ----- ----- ---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 다음 --- 서류를 첨부하여 ----- --- 7일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 ③ (생략)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1. 해당 항공기 형식에 관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 다만, 최초교육 및 연간 보수교육을 위한 비행훈련은 <u>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u> 이용	1. ----- -----. ----- ----- 제9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

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2개 형식 이상의 한정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별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을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 <u>모의비행훈련장치</u> -----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인적요소(Human Factor)</u> 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u>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u> ----- -----
4. ~ 5. (생략)	4. ~ 5. (생략)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 ④ (생략)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탑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⑥ 항공교통관제사는 제5항에</u>

	다른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이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생략)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u>	3. <u>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② <u>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 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 다. (생 략) <신 설>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 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u>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갖출 것</u> ③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전자출결을 위한 단말기 1대 이상(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u> 3. ----- ----- 그 밖 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초 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무인비행장치에 한 정한다)와 「항공사업법」 제48 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 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 2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교육생 및 교관에 대한 출 결관리를 하여야 한다.</u>
---	--